

입찰공고(안)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명 : "2022년 탄소중립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기획대상과제 표준화 동향 조사"

나. 입찰일정

구 분	입찰등록 및 제안서 마감
일 시	2022.11.21(월) 11:00 까지
장 소	대구본원 2층 동반성장팀 방문, 또는 우편접수(단, 마감일시 이전 도착분에 한함)

2.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서 정한 자격을 구비한 업체

나. 제안요청서의 제안참가 자격을 구비한 업체

3.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2.5/100 이상(현금, 법률에 의한 보증서 등)

가.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일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 본 평가관리원에 귀속됨

4. 업체선정 및 계약방법 : 제안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최우수업체 순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국가계약법" 시행 제43조 및 평가관리원 계약규칙 제49조, 비예가)

5. 용역의 착수, 완료일 : 계약체결일로부터 ~ 6개월 이내

6. 계약조건 공시 장소 : 본 평가관리원 동반성장팀 및 홈페이지(www.keit.re.kr) 참조

7. 입찰의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8. 입찰참가 신청서류

- 입찰참가신청서(당 원 양식)
- 제안서 및 요약서 이메일 제출(ysh0101@keit.re.kr)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입찰보증금(보험증권) 1부(2.5/100)
- 법인(개인)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1부
- 실적증명서 각 1부 이메일 동시 제출(ysh0101@keit.re.kr)
- 법인등기부등본 1부(해당 경우)
- 가격제안서 밀봉 제출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해당 경우)
- 입찰유의서 1부
- 청렴계약특별유의서 1부

9. 협력이익공유제·성과공유제 시행 안내

가. 본 계약 관련하여 위·수탁기업간 사전협의를 통한 검토 후 별도의 협력이익공유제 및 성과공유제 계약 체결이 추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협력이익공유제·성과공유제란 대기업 및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협력활동을 하여 달성한 성과 또는 이익에 대해 사전에 상호간 약정한 기준에 따라 공유하는 계약모델입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본 평가관리원의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제안요구서 등 입찰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유의할 것

나. 기타 세부용역 내용에 관한 사항은 탄소중립R&D기획TF팀(053-718-8438, 조영인 선임)으로,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계약담당자(053-718-8275, 윤수혁 전임)으로 문의할 것.

다. 제안서 작성비용은 제안업체에서 부담하며, 본 평가관리원은 책임지지 않음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09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참고]

1. 협력이익공유제(www.winplus.or.kr)

■ 협력이익공유제 정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중소기업 상호 간, 위탁·수탁기업 간 상생협력으로 발생한 위탁기업 등의 협력이익을 사전에 상호 간 약정한 기준에 따라 공유하는 계약모델

협력관계

이익공유 대상에 위·수탁기업 관계뿐만 아니라, 상생협력 활동의 대상이 되는 대·중소기업간, 중소기업간 등을 모두 포함
- 성과공유제는 위·수탁기업간 거래만 해당(유통업, IT플랫폼 등의 반영에 한계)

협력이익

공동의 노력을 통해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달성한 협력이익은 중소기업의 실질적 혜택을 위해 '재무적 성과'로 한정
- 협의(狹義)의 협력이익
공동의 노력을 통해 특정한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달성한 이익
- 광의(廣義)의 협력이익
일반적인 대·중소기업간 거래관계에서 협력사의 기여를 통해 달성한 이익
대기업의 인센티브 형식으로 협력업체에 제공하는 성과급 등을 포함

공유방식

협력사업 등을 통해 달성한 성과를 위탁기업의 재무적 성과(판매량, 영업이익 등)와 연계하여 이익을 공유
- 공유범위는 프로젝트, 개별기업, 물품·부품 등 기업의 상황에 따라 자율적 선택

사전약정

수탁기업 등의 혁신노력을 유발할 수 있도록 사전계약을 필수 조건으로 포함

협력이익공유제*는 중소기업과 협력사업을 통해 자발적으로 성과를 공유하는 기업에게
정부에서 세제 등의 혜택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기업(또는 주주)의 경영적 판단에 따라 성과공유제와 협력이익공유제를 선택하여 활용하는 것이며,
R&D투자 등에 협력사가 기여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2. 성과공유제(www.benis.or.kr)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제 8조에 따른 수탁기업이 원가절감 등 수탁·위탁기업간의 합리적인 공동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탁기업이 지원하고 그 성과를 수탁·위탁기업이 공유하는 계약모델을 말합니다.

현재 성과공유제는 원가절감을 포함, 수탁·위탁 기업간에 일어나는 사실상 모든 형태의 협력활동에 적용되는 개념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세 가지 요건 충족시, 모두 성과공유제에 포함



성과공유제 시행여부에 대한 판단. 객관적 실적 측정·평가 등이 가능토록 성과공유제 확산추진본부에서 성과공유제확인용 하고 확인서를 발급하여 각종 인센티브의 증빙 서류 및 실적점검에 활용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